

공정위,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기준지정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월)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이하 "경품고시"라 함)를 개정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동 경품고시에서는 현행 경품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비자경품 및 소비자현상 경품 제공행위의 허용기준을 단순화하여 소비자 경품의 경품제공 허용한도를 거래가액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소비자현상경품에 대해서는 경품 제공의 허용한도 규제를 폐지(제7조 및 제8조)하는 한편, 경품가액 3,000원 이하의 소비자경품제공 행위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제7조)하고 현행 연 2회, 1회당 2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던 소비자현상경품제공의 기간 및 회수에 대한 규제를 폐지(제9조)하였다.

또한 개정된 동 경품고시에서는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품행사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품행사에 대한 광고·홍보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오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품제공 행사기간, 경품의 제공조건 및 경품의 내용 등 경품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표시·광고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제8조제4항 신설)하였으며, 경품고시 운용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동 고시의 적용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해 동 고시상에 「경품류」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거래에 부수되지 않은 경품(공개현상경품) 및 사업자경품은 「경품고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제2조)하였다. 다만, 이번에 제외된 공개현상경품 및 사업자경품의 경우 공정

거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경품 제공자와 경품비용 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 경품류제공행위가 공동책임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개정된 동 경품고시에서는 거래가액 및 경품가액의 산정기준을 일원화하여 법 적용상의 분쟁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거래가액의 산정기준인 "소비자의 통상 구입가격 또는 거래 표준가격"을 "실제 소비자구입가격"으로 객관화하고, "통상 구입가격 또는 거래표준가격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현행 경품가액 산정기준을 "경품제공자가 구입한 가격 또는 제조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으로 통일하였으며,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는 경우, 한국축구팀이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자연현상 등 불확실한 미래 사건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경품을 소비자현상경품제공행위로 규정하여 경품 유형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근절하였다.

이번 경품고시의 개정은 범 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개혁 차원에서 민간 경제활동에 대한 규율을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고시 운용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공정위는 동 경품고시의 개정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쟁수단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경제활동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소비자들에게는 그 만큼의 선택의 기회가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품제공행위가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민간 소비를 자극함으로써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도 적극 기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시킴으로써 사행심을 조장하는 부당한

경품제공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으로 있다고 밝혔다.

◆ 개정 경품고시의 주요 내용 ◆

구 분	현 행	개 정
소비자경품 제공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가액 3만원 미만 : 3천원 이하 3만원 이상 : 거래가액의 10% 이내 (최고 1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가액의 10% 이하로 단순화 (3천원 이하 적용 제외)
소비자현상경품 제공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가액 1천원 미만 : 3만원 이하 1~10만원 미만 : 8만원 이하 10만원 이상 : 15만원 이하 ▶ 경품류제공금액 : 예상매출액의 1% 이하 ▶ 연 2회, 1회당 2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가액별 제공한도 폐지 ▶ 경품제공 총액한도 : 예상매출액의 1% 이하(현행 유지) ▶ 제공회수·기간 제한 폐지

한국공정경쟁협회는 이런 일을 합니다.

발족

민간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공정거래 정책에 관한 대정부건의 등 업계와 교량역할을 수행할 민간단체의 필요성이 업계와 정부에서 제기되어 1994년 11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 4단체와 주요 기업체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협회 설립 발기위원회를 구성, 1994년 11월 23일 창립총회를 통하여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협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1) 공정경쟁 관련 출판 및 홍보사업·공정거래제도 해설집 발간·배포·기타 각종 자료 발간 (2)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이해 제고·교육연수(강좌, 설명회 등)·세미나 개최·상담사업 (3) 공정거래관련 동향과 정보서비스 사업·정보지 월간 「공정경쟁」 발간·배포·기타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제도와 정책 운용 방향에 관한 정보 제공 (4)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회원의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제도 개선 사업·회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건의·외국의 공정거래제도 동향 연구 (6) 공정경쟁 제약 및 규제의 완화·경쟁 추진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 개선·경쟁리운드에의 사전 대비

'98년도 주요사업

(1) 공정 거래법 주요내용과 운용 방향을 포함한 공정거래에 관한 교육 및 연수 (2)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분석, 경쟁정책에 관한 학계·재계 등 각계의 논단 및 해외 동향 등을 수록한 월간 「공정경쟁」지 발간